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5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혜영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상욱, 이성배,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41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초예술은 상업예술이나 대중예술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반 예술로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
5조)

다.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
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 등”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예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은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상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 사업) 등과 같은 비용발생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확인결과 서울문화재단에서 **기초예술**¹⁾ 지원 등에 대해 **기추진**²⁾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사업을 추가로 확대(현재로서는 확대계획 없음)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추가 재정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계획은 기존 수립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는 기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재정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통상적 기초예술 범주 고려] 통상 기초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던 문화예술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가운데 영화와 연예를 제외하는 것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서울문화재단에서 기초예술 관련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기추진사업] 서울시 문화본부 2025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53,689,275천원(예술인 관련 지원사업 포함)